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8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김승수 · 김용태 · 김선교
김소희 · 이종배 · 박성훈
김기웅 · 정연욱 · 이헌승
박정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용자

제18조의2 중 “제18조제5호의2”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호의2에 따른 용자금
2.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용자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p>1. (생 략) <u><신 설></u></p> <p>2. ~ 10. (생 략)</p> <p>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u>제18조제5호의2</u>에 따른 용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용자</u></p> <p>2. ~ 10.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u>다음 각 호</u>-----</p> <p>-----</p> <p>-----</p> <p>-----</p> <p>-----.</p> <p><u>1. 제18조제1호의2에 따른 용자</u> <u>금</u></p> <p><u>2.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용자</u> <u>금</u></p>